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· 운영 행정예고

화정청소년자유공간 내·외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제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1일

화정청소년자유공간의 장

1. 예고내용

가. 화정청소년자유공간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정보주체 (직원, 방문 민원인, 지역주민 등) 대상 사전의견수렴

2. 설치목적

가. 설치목적: 방범·방재용

나. 설치장소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3 외부

다. 설치대수: 총 2대

라.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

구분	CCTV설치장소	대수	CCTV 설치목적	촬영시간
1층	주 출입문(화정역 1-2출구 사이)	1	방범·방재용	24시간
1층	부 출입문(화정역 3-4출구 사이)	1		
		총 2대		

3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동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나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다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4. 행정예고 기간

- 가. 기간 : 2024. 11. 1. ~ 2024. 11. 30

5. 의견제출

- 가.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30일 까지 의견서를 화정청소년자유공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서식 : 붙임1
- 다. 제출방법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
- 나. 제출기관: 화정청소년자유공간
 - 주소: 경기도 고양시 화정로 63 지하 (화정청소년자유공간)
 - FAX: 031-995-4314
 - E-mail: hjyouth22@gmail.com
 - 문 의 처 : 화정청소년자유공간 031-995-4312